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2004. 1. 19. 제정

2016. 3. 2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목적 및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법과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정관, 본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산학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본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지적재산권·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업무
7.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신설 2016.3.23.>
8.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 <개정 2016.3.23.>

제5조(업무조정 의 건의)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교의 각 연구기관 또는 사업조직의 업무의 조정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6조(이사)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둔다.

제7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단장의 자격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정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④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제8조(부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부단장의 자격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정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구)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정한다.

제11조(인사) ①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본교의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필요한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조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본교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2조(재산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제13조(운영경비)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기부금·보조금
3. 사업수익

제14조(재산처분에 관한 행위의 제한) 단장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임대, 교환, 증여,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무의 면제

제15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4장 보칙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제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정관의 변경 등) ①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관의 변경을 발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다.

제18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2.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이 있는 때
- ②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 ③ 해산시의 단장은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총장이 청산인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공고)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에서 정한 공고사항
2.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 ②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및 이대학보에 공고한다. <개정 2005.4.21.>

부칙 <2004. 1. 19.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학협력단 설립등기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본교와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적재산권의 이전) 총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시에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 <2005. 4. 21. 개정>

이 정관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23. 개정>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